

허가물질

[] 제조
[] 수입
[] 사용

재허가신청서

※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발급일	처리기간	10일
신청인	상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
	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	주소(사무실) (전화번호:)	
수입자	상호(명 칭)		사업자등록번호	
	성명(대표자)		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	

신청사항	① 허가번호	
	② 재허가(한정)기간	
	자료보호 신청 여부	[] 해당 [] 해당없음

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허가물질의

[] 제조
[] 수입 재허가를 신청합니다.
[] 사용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유역(지방)환경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5조제2항에 따른 허가증 원본(전자문서로 발급받은 경우는 제외합니다) 2. 다음 각 목의 자료 중 변경된 사항이 기재된 서류 가. 화학물질의 용도 나. 화학물질의 위해성 다. 허가물질의 대안 분석 및 실행가능성 라. 허가물질의 대체 계획 3. 「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」 별지 제67호의3서식의 국내 대리인 선임 사실 신고증(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)	수수료 매품목당 13,000원(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·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,700원)

작성방법

- 1. 「화학물질관리법」 제48조의4제1항에 따라 선임된 국내대리인이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신청인란에 국내대리인의 정보를 기재하고 수입자란에 국내 수입자의 정보를 기재합니다.
- 2. ①란은 허가물질의 제조·수입·사용 허가증에 적힌 허가번호를 적습니다.
- 3. ②란은 허가물질을 제조·수입·사용을 희망하는 최소한의 기간으로 이전 허가기간보다 짧게 작성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청인	처리기관
	유역(지방)환경청

